



##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!

- Check 1** 이천시 및 수도권(경기·서울·인천)에 거주하는 **무주택 세대주**
- Check 2** **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**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Check 3** **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** 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충족)

### 특별공급 청약 일정

구분	신청 일시	신청 방법	신청 장소
특별공급 청약	2024. 11. 11. (월) 09:00 ~ 17:30	인터넷 청약 (PC 또는 스마트폰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: '청약Home'
당첨자 발표일	2024. 11. 20. (수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확인 가능	

\* 정보취약계층(고령자, 장애인 등)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함[접수시간 10:00~14:00]  
-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

### 주택형별 공급세대수

구분	59A	59B	소계
노부모 부양	10	5	15

###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/서울특별시/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-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</li> <li>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시에 한함)한 분</li> <li>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-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첨자 선정 순서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→ ④추첨</li> <li>①지역: 해당 지역 거주자(이천시 거주자) → 기타 지역 거주자(경기도, 서울시, 인천시 거주자)</li> <li>②가점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 1(가점제 적용기준)에 의거한 청약 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청약 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</li> <li>③청약통장 가입 기간: 가입 기간은 순위 가산일을 기준으로 함 - 입주자 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.</li> <li>* 단,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의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제53조 제6호 무주택기간 미적용 *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청약 불가</li> <li>•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-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</li> <li>•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</li> </ul>

### 가점 산정기준표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별표 1의 2 나목)

가점 항목	가점 상한	가점 구분	점수	가점 구분	점수	
①무주택 기간	32	30세 미만 미혼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- 주민등록표등본 : 배우자 분리세대 시,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 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*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	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7년 이상 ~ 8년 미만	16					
②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	- 주민등록표 등·초본 - 가족관계증명서 *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- 18세 이상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시 추가 서류 ①18세 이상~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 ②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본, 출입국사실증명원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 이상	35	
		3명	20			
③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- 청약통장(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) -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음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

\*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

\*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

### 특별공급 중복청약 관련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,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 2에 따라 세대원 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구분	청약자간 관계	중복청약 유형	중복당첨 시 처리방법
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	세대원	특공+특공 [가능]	당첨자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
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	부부	특공+특공 [가능]	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,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*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
	세대원	특공+특공 [불가]	1건이라도 당첨 시 모두 부적격
		특공+일반 [가능]	모두 유효